

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인천광역시

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의안 번호	12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11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201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도 예산안	2014년도 당초 예산액	증(△)감	%	비고
합 계	7,764,871	7,837,281	△72,410	△0.9	
일 반 회 계	4,977,717	5,263,812	△286,095	△5.4	
특 별 회 계	2,787,154	2,573,469	213,685	8.3	
공기업특별회계	1,319,523	1,240,764	78,759	6.4	
기타특별회계	1,467,631	1,332,705	134,926	10.1	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, 제128조(계속비)
- 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, 제14조(일시차입금), 제40조(예산의 내용), 제42조(계속비 등), 제43조(예비비), 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),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